

# 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77,202,572	17,316,077
일반회계	544,087,368	16,322,621
특별회계	33,115,204	993,456
기타특별회계	33,115,204	993,456
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	2,517,788	75,534
섬진강댐특별회계	3,183,387	95,502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37,680	16,130
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	683,843	20,515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4,411,857	732,356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,780,649	53,419

제 2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「세입 세출 예산」 과 같다

제 3 조 202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「해당없음」 으로 한다

제 4 조 2023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「24,900,000천원」 으로 한다

제 5 조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「3,079,712천원」 과 같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